

[사 건 명] 행심 2015-17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4일, 학부모동반 교육 4시간』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04.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특별교육 4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가. 청구인 ○○○는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인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5. 4. 29.경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되었고, 그 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특별교육 4일 및 청구인의 부모에게 동반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2015. 5. 4.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2015. 5.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피해학생은 전학 온 친구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학급 내에서 좋은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청구 외 ○○○ 학생의 “●● 보다 내가 더 노래를 잘하지 않느냐” 라는 말에 청구인의 “맞아, ●● 잘 부르는 건 아님” 이라는 말은 피해학생과의 관계로 볼 때 고의적으로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일도 아니었고, 또한 같은 반 아이들 모두가 공감하며 웃는 상황이었는데 청구인만을 가해자로 지적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너 머리 묶어” 라고 한 것은 선도부인 청구 외 신시우 학생이 청구인에게 피해학생의 머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학교규율에 위반된 두발로 인해 벌점 받을 것을 염려하여 머리를 묶어야 하지 않느냐고 걱정스러운 어투로 이야기한 것뿐이지, 창피주기 위함은 아니었다.
- 다. 사안 조사과정에서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학교폭력 담당 경찰이라 하여 위협감을 느끼게 했으며, 청구인의 말에는 귀 기울여주거나 믿어주지 않고, 피해학생의 상처만을 염려하였다. 또한 사건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피해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이유가 ○○○ 학생과 청구인 때문이라고 실명을 거론하셨고, 수업과 시험을 격리해서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교감 선생님도 격리조치에 대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하셔서, 자치위원회 결정 이전에 이미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 되어 학교생활에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된 것은 부당하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음악실에서 청구 외 ○○○의 말에 반 학생 모두가 공감하며 웃는 분위기여서 “맞아, ●● 잘 부르는 건 아님” 이라고 말한 것이 피해학생을 무안하

게 만들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음악 가창 수행평가 시험시간이었고, 피해학생의 노래를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하여 노래실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학폭법 제2조 언어·심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나. 4월 20일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학생회 자치규율(머리가 겨드랑이 선보다 길면 수업시간만 묶도록 학생회자치에서 결정한 규율)에 위반된 두발상태로 인해 별점 받을 것을 염려하여 머리를 묶어야 하지 않느냐고 걱정스러운 어투로 이야기하였다고 하지만, 둘만의 대화가 아닌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창피를 주고, ●●● 학생의 말에 동조하며 별점을 운운하는 것으로 심리적 불안을 조장하는 협박을 당했다고 피해학생이 주장하고 있어, 언어·심리적 폭력과 따돌림(2인 이상이 집단으로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다.

다. 피해학생은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교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가슴 울렁거림, 식욕부진 및 구토 증세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으로 인해 ●●● 학생은 본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전학조치를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 특별교육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마. 피해학생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것은 담임교사가 ●●● 학생에게 말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안 조사과정에서는 위협 없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며, 피해학생의 피해상황, 자치위원회 과정에 대해 학급에 알린 것은 졸업할 때까지 다 같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사소한 행동과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활지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또한 자치위원회 전 피해학생과 청구인 등을 격리 조치 한 것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전담기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각 구술심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2015. 3. 중순경 음악실에서 청구 외 ○○○가 피해학생의 가창 수행평가를 듣고 “○○보다 내가 노래 더 잘 부르는 듯” 이라 했고, 이 말에 반 아이들 모두가 웃는 분위기에서, 청구인은 “맞아, ○○ 잘 부르는 건 아님” 이라고 동조한 사실이 있다.
- 나. 2015. 4. 20.경 여러 명이 있는 교실에서 청구 외 ○○○가 피해학생에게 “니 머리 개 길다”, “니 머리 묶어! 너 별점임!” 이라고 말했고,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너 머리 묶어” 라고 말하며 ○○○의 말에 동조하였다.
- 다. 피해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의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교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가슴 울렁거림, 식욕부진 및 구토 증세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청구인은 같은 반 친구인 청구 외 ○○○ 등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놀리고, 면박을 주고, 골탕을 먹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여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는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3) 2015. 3. 중순경 음악실에서 청구 외 ○○○가 피해학생의 가창 수행평가를 듣고 “○○보다 내가 노래 더 잘 부르는 듯”이라 말하여 피해학생을 비하하며 같은 반 친구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피해학생에게 모욕감을 준 상황 속에서, 청구인은 “맞아, ○○ 잘 부르는 건 아님”이라고 동조 비하하여 모욕감을 주고,
- 4) 2015. 4. 20. 경 여러 명이 있는 교실에서 청구 외 ○○○가 피해학생에게 “니 머리 개 길다”, “니 머리 묶어! 너 별점임!”이라고 말하여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등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상황 속에서,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니 머리 묶어”라고 말하며 ○○○ 학생의 말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켰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행위가 두 차례에 그쳤다는 점,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학생을 가해한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점, 청구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의 남용·일탈이 있다고 판단된다.
- 3) 다만, 청구인과 피해학생 간의 화해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이 해당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원하고 있어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로 처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너무 중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변경처분을 하도록 한다.

V.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들 중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 처분하여 재결한다.